



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상한 상향〉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6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5. 3. 21.
3. 회부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이하 ‘구조금’)인 유족구조금과 장해·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경우(각각 48개월)보다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지급 가능한 구조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u>48개월</u>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구조금액) ① ----- ----- ----- ----- ----- ----- <u>96개월</u> ----- ----- ----- ----- -----.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	② ----- ----- ----- -----

현행	개정안
월 이상 <u>48개월</u>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u>60개월</u>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6조¹⁾는 구조대상 범죄피해²⁾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같은법 제17조³⁾에서는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

1)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2)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3)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제22조4)에서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대 48개월’인 구조금 산정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96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30조5)의 취지 및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이 법의 목적6)을 고려할 때 지급 가능한

4)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5)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6)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금액을 증가시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헌법 제30조에서 도출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것인바,⁷⁾ 구조금 상한의 조정을 통하여 지급 가능 구조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의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입법은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⁸⁾ 그동안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원 액수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는 점⁹⁾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급 가능 구조금액을 상향시킬 필요성 및 타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조금의 재원은 전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같은법 제6조¹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집행된 벌금액의 일부,

7) 헌재 2009헌마354, 2011. 12. 29.

8) 헌재 2009헌마354, 2011. 12. 29.(주7)

9) 한국일보, “가난한 범죄피해자에겐… 국가의 지원금도 가난하다”, 2024. 2. 29. 및 국제신문, “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2023. 9. 25. 등

10)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지급 가능 구조금 액수를 상향함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 구조와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